

부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0가합444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선정당사자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막

2. E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179,767,360원, 피고 E은 9,219,32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밸브업, 플랜트업(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맥동파전자해머 제조 및 판매업, 운반하역설비 및 크레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D은 F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로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이고, 피고 E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채무자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변제 등

1) 채무자 회사는 피고 D에게 2018. 11. 4. 50,000,000원 및 48,017,734원을, 같은 달 5.

36,463,07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34,480,804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2)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소외 주식회사 G에 대한 45,286,556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3) 피고 D은 2019. 6. 17.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한 변제로 45,286,556원을 지급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채권양도

1) 채무자 회사는 2018. 11. 5. 근로자 대표인 피고 E에게 소외 H 주식회사에 대한 7,069,92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2) 채무자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 대표인 피고 E에게 소외 I에 대한 2,149,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I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3) 피고 E은 2018. 11. 13. 소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한 변제로 7,069,9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소외 I로부터 이 사건 제3채권에 대한 변제로 2,149,4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선정당사자 A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인 별지 선정자 명단 선정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2019. 3. 26. 피고들 및 소외 J을 상대로 채무자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양도 등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9. 5.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9하합1007호, 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

3) 원고는 2020. 3. 2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2020. 4. 27.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제1 내지 3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금의 반환 및 이 사건 제1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으로 합계 179,767,36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으로 합계 9,219,32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제1채권양도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 D에게만 변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 및 이 사건 제1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된다.

① 채무자 회사는 2018. 11. 2.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부도가 발생하자 같은 날 피고 D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8. 11. 5.부터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② 이 사건 변제는 위와 같이 채권단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인 2018. 11. 4. F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J의 요청에 따라 2018. 11. 4.부터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쳐 F의 대표인 피고 D에게 지급된 것이다.

③ 소외 J은 2018. 11. 5. 채권단 회의가 열리기 전 채무자 회사에 찾아와 채무자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채권을 포함한 여러 채권들의 양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피고 D은 채권단

회의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제1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제1채권양도에 채무자 회사 채권자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피고 D은 이 사건 변제는 소외 K가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어서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당좌거래 정지 이후 회사자금의 인출이 동결될 것에 대비하여 경리담당인 소외 K의 개인계좌에 회사 자금 134,480,804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소외 J의 요청에 따라 이를 피고 D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변제는 채무자 회사의 편파변제 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 D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134,480,804원 및 이 사건 제1채권의 가액 45,286,556원 합계 179,767,360원(= 134,480,804원 + 45,286,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사가 당좌 거래가 정지된 지 불과 3일 후 근로자 대표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2, 3채권을 양도하여 그 무렵 피고 E이 위 각 채권 합계 9,219,32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 E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 E에게만 이 사건 제2, 3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 3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 3채권의 가액 합계 9,219,320원(= 7,069,920원 + 2,14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E은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제2, 3채권의 가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올라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20. 5. 27. 선정당사자 A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L에게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금액 상당액인 9,219,9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선정당사자 A는 이 사건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소를 원고가 2020. 3. 27. 수계함에 따라(채무자 회생법 제406조 제1항, 제347조) 같은 날 이 사건 소에서 탈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E이 선정당사자 A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위은숙, 판사 서진희

선 정 자 명 단

1. A(M회사) (선정당사자)
2. N(O회사)
3. P(Q회사)
4. R(S회사)
5. T주식회사
6. U(V회사)
7. W(X회사)
8. Y(Z회사)
9. 주식회사 AA
10. 주식회사 AB
11. AC(AD회사)
12. 주식회사 AE
13. AF(AG회사)
14. 주식회사 AH
15. AI(AJ회사)
16. 주식회사 AK
17. 주식회사 AL
18. AM(AN회사)
19. 주식회사 AO

- 20. AP(AQ회사)
- 21. AR(AS회사)
- 22. AT(AU회사)
- 23. AV(AW회사)
- 24. 주식회사 AX
- 25. AY 주식회사
- 26. AZ(BA회사)
- 27. BB(BC회사)
- 28. 주식회사 BD
- 29. BE(BF회사)
- 30. 주식회사 BG
- 31. BH(BI회사)
- 32. BJ(BK회사). 끝.

